

## 진천군 공고 제2021-66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및 과태료 관련 고지서 등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감,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충북진천다\*\* 김광\* 등 총218건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1. 4. 27. ~ 2021. 5. 12.(15일간)

1.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진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고지서를 진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에서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 20%감경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4. 문의처 : 충청북도 진천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 (☎:043-539-3078, FAX:043-537-0474)

2021. 4. 27.

진 천 군

